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9. 25.(월) 11:00 < 9.25.(월) 석간 > 배포 2023. 9. 22.(금)

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
- 해외인수·합병 심사에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추가하여 심사 강화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9. 25.(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·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,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,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
한편,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▲처벌구성요건 확대(목적→고의), ▲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(징역, 벌금) 상향, ▲침해행위 추가(기술유출 중개인(브로커),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·공개), ▲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, ▲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시행령*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.

* 주요 내용 : ①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 · 합병 심사범위 확대
② 판정신청통지,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(절차, 양식 등) 규정

담당 부서	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	책임자	과 장	최성준 (044-203-4850)
		담당자	사무관	권한임 (044-203-485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산업기술”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(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·단체의 장을 말한다)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따라 지정·고시·공고·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. 가. ~ 다. (생 략) 라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. ~ 자. (생 략) 2. ~ 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마. ~ 자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5. “외국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가.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나.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.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제11조(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)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(이하 “국가핵심기술의 수출”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11조(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당 국가핵심기술---------- ---------- 수출(이하 “국가핵심기술의 수출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	⑦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----------.
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,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	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,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
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⑨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	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심의	2. 제6항----------
3.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심의	3. 제8항제2호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부정신고----------
⑨ (생 략)	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
⑩제1항의 승인, 제4항의 신고,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⑪ 제1항의 승인, 제4항의 신고, 제6항·제8항의 수출중지·수출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삭 제>
제11조의2(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·합병등)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	제11조의2(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·합병등)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

현 행	개 정 안
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(이하 “해외인수·합병등”이라 한다)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인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해외인수·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·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	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(이하 “해외인수·합병등”이라 한다)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외인수·합병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·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외인수·합병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인수·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

현 행	개 정 안
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.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·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·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,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·합병등에 대하여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⑧ 제1항,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	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·합병등에 대하여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하려는 대상기관 또는 외국인은 해당 해외인수·합병등이 승인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또는 해외인수·합병등의 상대방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인수·합병등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

현 행	개 정 안
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자는 해당 해외인수·합병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1.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2. 해당 해외인수·합병등이 제1항의 승인대상인지 여부 및 제5항·제6항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3. 그 밖에 해당 해외인수·합병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·합병등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, 조	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,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한 경우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 또는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1.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. 제5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·합병등에 대한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심의 3.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부정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·합병등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심의

현 행	개 정 안
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인수·합병등에 대하여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1.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의2.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심의 2. 제5항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해외인수·합병등에 대한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심의 3. 제7항의 조치에 따른 대상기관의 손해에 대한 심의 4. 제9항에 따른 미승인, 부정승인,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에 대한 해외인수·합병등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 심의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	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대상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대상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⑩ 제1항의 승인, 제3항의 신고, 제5항·제7항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6항의 사전검토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⑫ 제1항의 승인, 제2항·제5항 및 제6항의 신고, 제7항 및 제9항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<신 설>	제11조의3(이행강제금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해외인수·합병등의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

현 행	개 정 안
	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)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의2.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는 행위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6의2.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·합병등을 하는 행위	6의2. ---------- 제11조의2제3항----------.
6의3. (생 략)	6의3. (현행과 같음)
7. 제11조제5항·제7항 및 제11조	7. 제11조제6항·제8항 및 제11조

현 행	개 정 안
의2제7항·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	의2제5항·제7항-------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3(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) ① (생 략)	제14조의3(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2조제1호나목·다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지정·고시·공고·인증한 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.	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산업기술의 보안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술지원	2.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비밀유지의무) 다음 각 호의	제34조(비밀유지의무)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·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·직원	3의2.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----------
<신 설>	3의3.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업무를 수행하는 자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단서신설>	제39조(과태료) ① ----------. 다만,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한다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제11조제10항 및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